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의안번호 : 제2392호

나. 제 안 자 : 유만희 의원(찬성자 30명)

다. 제 안 일 : 2025년 2월 3일

라. 회 부 일 : 2025년 2월 6일

2. 제안이유

○ 서울시는 한강 수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강 수상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한강공원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○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,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한강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필요성 제기

○ 이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에 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을 명시하여 모든 시민이 한강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한강공원 및 한강공원 이용시설을 신설함 (안 제7조제5호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○ 이번 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 수상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 한강공원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에 따른 '한강공원과 공원이용시설'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·공간·시설 등에 적용된다.	제7조(적용범위)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**5.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제3조제1호에 따른 한강공원 및 같은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원이용시설**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나. 검토 내용

(1) 현행 조례에서의 규정사항

○ 현행 조례 제7조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를 '건축물, 공공공간, 공적공간, 도로,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공공시설물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' 등 모든 도시공

간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
○ 현행 조례 제7조제3호에서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공원녹지법')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

○ 한강공원은「공원녹지법」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도시공원의 한 유형인 수변공원으로서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이용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[1]에서는 한강공원을 「공원녹지법」 상의 '공원녹지'[2]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관련 조례와 법률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

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

제7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・공간・시설 등에 적용된다.

1. 「건축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**건축물**,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**공공공간** 또는 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 제2조제1호의 **공적공간** 등
2. **도로**(차도・자전거도・보도)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
3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**도시공원**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**공원시설**
4.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**공공시설물**등
5.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・운영하는 복지시설, 교육시설, 체육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공원녹지법)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--

1)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(이하 한강공원 조례)」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한강공원"이란 「**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**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.

2) 「**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**」 1. **"공원녹지"**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.
가. **도시공원,** 녹지, 유원지, 공공공지(公共空地) 및 저수지
나. 나무, 잔디, 꽃, 지피식물(地被植物) 등의 식생(이하 "식생"이라 한다)이 자라는 공간
다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

3. "도시공원"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·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3조, 제14조, **제15조,**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, 제19조, 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20조,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, 제39조, 제40조, 제42조, 제46조, 제48조의2,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.

가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

나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8조의2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(이하 "도시자연공원구역"이라 한다)

4. "공원시설"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도로 또는 광장

나. 화단, 분수, 조각 등 조경시설

다. 휴게소, 긴 의자 등 휴양시설

라. 그네,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

마. 테니스장, 수영장, 궁도장 등 운동시설

바. 식물원, 동물원, 수족관, 박물관,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

사. 주차장, 매점,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

아. 관리사무소, 출입문, 울타리,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

자. 실습장, 체험장, 학습장,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(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위한 시설

차. 내진성 저수조, 발전시설, 소화 및 급수시설,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

카.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

1. 국가도시공원: 제19조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

2. 생활권공원: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·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

가. 소공원: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
나. 어린이공원: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
다. 근린공원: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·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
3. 주제공원: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

가. 역사공원: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, 유적·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나. 문화공원: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다. 수변공원: 도시의 하천가·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·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(이하 생략)

(2) 한강공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

○ 서울시(이하, '시')는 한강공원을 포함한 수변공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'수변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'을 발간('23.12월)하고, 이를 기반으로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 '모두를 위한 피크닉 풀' 조성사업('24.7월)을 추진[3]하는 등 수변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

○ 시는 '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(2017)'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마련한 바 있으나 기존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도시환경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그 한계가 드러남

○ 이에 따라 2023년 '수변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'을 발간[4]하여 수변공간(한강공원 및 4대 지천)의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기준을 새롭게 정립한바 있음

○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한강공원은 현행 조례상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, 실제로도 시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○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'도시공원'의 한 유형으로 한강공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,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한강공원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강조할 수

---

3) 「2023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」 사업 추진계획(디자인정책담당관-528,2023.1.26.)
「2023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」 사업 추진 결과보고(디자인정책담당관-8463,2024.7.31.)

4) **'수변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 (2023)'** 목적 및 배경
- 한강과 4대 지천은 서울 전역에 걸쳐 연속적인 수변 공공공간을 형성하며 시민들의 산책, 운동, 문화·여가 활동을 위한 중요한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, **한강과 4대 지천 양안에 차도가 개설된 구간이 많아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계절에 따른 유량 변화로 인해 시설물 설치에 제한이 있으며 대부분의 공간과 시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음**
- 인구 고령화, 장애인 인구 증가,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문화·여가 공간의 포용성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, **서울시는 수변공간을 보다 접근성이 높고 이용이 편리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필요성을 인정하고, 이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함**

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

다. 종합 의견

○ 이번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 수상활성화 정책추진과 함께 한강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한강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한강공원과 공원이용시설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

○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'도시공원'의 한 유형으로서 현행 조례에 한강공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한강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

○ 한강공원은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및 「공원녹지법」에 따라 공원녹지, 도시공원, 수변공원에 해당되고, '수변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'을 발간('23.12월)과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 '모두를 위한 피크닉 풀' 조성 사업('24.7월) 추진을 감안할 때 법·제도적으로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

○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중복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, 조례 개정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를 한강공원 뿐만 아니라 수변공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